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97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이수진 · 최혁진 · 김정호
송옥주 · 민병덕 · 문진석
허성무 · 김영환 · 김문수
서영교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

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란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료영역을 말한다.
2. “지역의료”란 특정 지역의 인적·물적 보건의료자원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총체를 말한다.

3. “진료권”이란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서 의료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역범위를 말한다.

4. “필수의료·지역의료 보건의료인”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으로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역의사”란 필수의료·지역의료 보건의료인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복무를 하기로 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6. “공공의사”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복무를 하기로 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7. “필수의료취약지”란 진료권 내 필수의료 자체충족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필수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활용계획
4. 제11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필수의료·지역의료 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책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시·도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관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필수의료 공급 및 수요 현황
2. 필수의료 제공체계: 의료기관·진료과목 종류별 운영 현황
3. 필수의료·지역의료 보건의료인의 수급·배치 및 근무환경 현황
4.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현황
5.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성과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에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대비 병상·인력·시설 등의 공급 적정성, 자체충족률 개선 실적, 제11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등

제11조(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医료를 지역 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이하 “진료협력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료협력네트워크는 제12조에 따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보건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환자의 이송·회송 및 진료정보 전송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보건의료인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간 교육·수련·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료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료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

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진료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이하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진료
2. 필수의료 보건의료인의 진료협력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파견
3.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4. 필수의료 환자의 이송·회송 등 진료협력체계 관리·운영
5. 진료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거점의료기관은 포괄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할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거점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을 받은 거점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거점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이 중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도필수의료위원회) ① 필수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필수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시·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도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의료·지역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의 진료협력네트워크의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1. 진료협력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의료 담당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필수의료·지역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공동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필수의료·지역의료 지원단) ① 이 법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진료협력네트워크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필수의료 지역 완결성 강화를 위한 시책

제15조(필수의료·지역의료 보건의료인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지역의료 보건의료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력양성계획을 세

우고, 교육·수련·연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수급 전망은 진료권별·진료과목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의사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학·치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공공의료와 관련한 과정, 지역 내 의료기관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등으로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지역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⑥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의사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의사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의학·치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공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공공의료와 관련한 과정, 지역 내 공공의료

기관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 및 공공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등으로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공공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⑥ 공공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의사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파견·지원) ① 진료협력네트워크의 운영을 담당하는 거점의료기관은 해당 진료협력네트워크의 의료기관에 전문의 등 전문인력의 파견 및 지원을 통하여 필수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파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의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제공하는 인적·물적 및 유·무형의 자원(이하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라 한다)의 발굴·육성·연계 등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의 구축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특성화·전문화 및 교육·연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과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거점의료기관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기관·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그 내용이 중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점의료기관, 진료협력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 필수의료취약지 등에 대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수가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수의료·지역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22조(연구·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시설·장비·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인력의 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확산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이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5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필수의료의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
2. 필수의료·지역의료 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3. 거점의료기관의 운영 지원
4. 진료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5.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
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법」 제7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
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
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청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